

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44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8. 1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

주요골자

-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 개정
- 보건소법 ⇒ 지역보건법

개정근거

- 지역보건법 제14조

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“보건소법 제8조”를 “지역보건법 제14조”로 하고, 제11조제1항
본문중 “제8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보건소법 제8조</u>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11조(성적원본의 말소) ①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<u>제8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지역보건법 제14조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1조(성적원본의 말소) ①----- ----- -----<u>제9조의</u>----- ----- -----</p>